

관리번호 -

(년 귀속)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

1 기본사항								
① 성명				② 주민등록번호				
③ 주소								
④ 신고구분		10 정기신고		20 수정신고		30 경정청구		
		40 기한후신고		⑤ 전화번호				
⑥ 종교관련증사자 여부				여 1 / 부 2				
2 환급금 계좌신고		⑦ 은행명				⑧ 계좌번호		
3 세무 대리인		⑨ 성명		⑩ 전화번호		⑪ 대리구분		
		⑫ 관리번호		⑬ 조정번호		⑭ 신고		
4 퇴직 소득 명세	⑭ 지급처명		⑮ 입사일		⑯ 지급일		⑳ 퇴직급여	
	⑰ 사업자등록번호		⑱ 퇴사일		㉑ 근속월수			㉒ 비과세 퇴직급여
								㉓ 과세대상 퇴직급여
	합 계							
5 근속연수계산								
㉔ 제외월수		㉕ 가산월수		㉖ 중복월수		㉗ 정산근속연수		
						㉘ 2012.12.31.이전 근속연수		
						㉙ 2013.1.1.이후 근속연수(㉖-㉗)		

6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								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퇴직소득세 금 액	
		퇴직소득(㉒)					㉚	
		근속연수공제					㉛	
		환산급여 [(㉚-㉛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				㉜	
		환산급여별공제					㉝	
	퇴직소득과세표준(㉜-㉝)					㉞	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			금 액	
		환산산출세액(㉞ × 세율)					㉟	
		산출세액(㉞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			㊱	
		세액공제					㊲	
가산세					㊳			
차감	기납부 세액					㊴		
	납부(환급)할 총세액(㉟-㊲+㊳-㊴)					㊵		
	분납할 세액(2월내)					㊶		
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㊵-㊶)					㊷			

7 2016-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(※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)								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퇴직소득세 금 액	
		퇴직소득(㉒)					㉚	
		근속연수공제					㉛	
		환산급여 [(㉚-㉛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				㉜	
		환산급여별공제					㉝	
	퇴직소득과세표준(㉜-㉝)					㉞	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			금 액	
		환산산출세액(㉞ × 세율)					㉟	
		산출세액(㉞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			㊱	
	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금 액
퇴직소득(㉒)					㉚			
퇴직소득정률공제					㉛			
근속연수공제					㉜			
퇴직소득과세표준(㉚-㉛-㉜)					㉝			
세액계산		계 산 내 용					2012.12.31.이전	
		과세표준안분 (㉝ × 각근속연수/정산근속연수)					2013.1.1.이후	
	연평균과세표준(㉝/각근속연수)					합계		
환산과세표준(㉝ × 5배)					㉞			
환산산출세액(㉞ × 세율)					㉟			
연평균산출세액 (12.12.31.이전: ㉟ × 세율, 13.1.1.이후: ㉟/5배)					㊱			
산출세액(㉟ × 각 근속연수)					㊲			

작성 방법

1. ㉑ 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.
3. ㉑ 기본사항(㉑)란: 퇴직소득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"종교관련종사자"에 해당하며, 「소득세법」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"종교관련종사자 여부"란에 '여 1' 을 선택합니다.
4. ㉒ 환급금 계좌신고(㉒·㉓)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5. ㉔ 세무대리인(㉔~㉖)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6. ㉗ 퇴직소득명세(㉗~㉙)란: ㉗ 퇴직급여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.
 ※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(퇴직소득지급명세서)[별지 제24호서식(2)] 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.
7. ㉚ 근속연수계산(㉚~㉛)란: [근속연수 = (총근속월수 - 중복월수)/12]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. 다만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,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.
8. ㉜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㉜ 퇴직소득란: ㉜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.
 - 나. ㉝ 환산급여별공제란: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.

구분 \ 환산급여	8백만원 이하	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
환산급여공제	환산급여의 100%	8백만원+ (8백만원 초과분의 60%)	4천520만원+ (7천만원 초과분의 55%)	6천170만원+ (1억원 초과분의 45%)	1억5천170만원+ (3억원 초과분의 35%)

- 다. ㉞ 환산산출세액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라. ㉟ 과세표준안분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. 12. 31.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. 1. 1.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마. ㊱ 환산과세표준란과 ㊲ 환산산출세액란: 2013. 1. 1.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.
- 바. ㊳ 연평균산출세액란: 2012. 12. 31. 이전 부분은 ㊱ 연평균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2013. 1. 1. 이후 부분은 ㊲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사. 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: ㊴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 \ 퇴직연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퇴직연도별 비율	20%	40%	60%	80%

- 아. ㊵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」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 - 자. ㊶ 가산세란: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).
9.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,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